

춘천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5182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51829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23 선고 2015가단458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A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8. 9.

판결 선고 2017. 11. 1.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23. 선고 2015가단4589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660㎡, D 전 9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9, 31, 3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 및 (0) 부분 133㎡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5, 33, 3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ㄷ) 및 (ㅂ) 부분 105㎡ 지상 비닐하우스를 각각 철거하고, 원주시 D 전 9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ㅅ) 부분 18㎡ 지상 창고, 별지 참고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ㅈ) 부분 5㎡ 지상 폐농산물건조기, 폐보일러를 각각 철거하며, 원주시 C 전 66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ㄹ) 부분 18㎡ 지상 적벽돌, 농산물 운반 플라스틱 박스를 철거하고, 원주시 C 전 660㎡, D 전 993㎡를 각각 인도하며, 6,236,000원 및 2016. 5. 1.부터 원주시 C 전 660㎡ 및 D 전 993㎡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660㎡, D 전 9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9, 31, 3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ㄴ) 및 (0) 부분 133㎡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과 원주시 D 전 9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內) 부분 18㎡ 지상 창고를 각각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8번째 줄, 제5쪽 아래에서 5번째 줄,

제6쪽 7번째 줄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6쪽 7번째 줄의 "1)" 뒤에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국

판사윤아영

판사이소진

별지